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| | |
|-----------|--|
| 편 드 명 | (변경 전) 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|
| | (변경 후) 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 |
| 정 정 서 류 | (간이)투자설명서 |
| 정 정 사 유 | 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-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|
| 효 력 발 생 일 | 2026년 04월 01일 |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| 항목 | 정정사유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펀드명 |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| 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| 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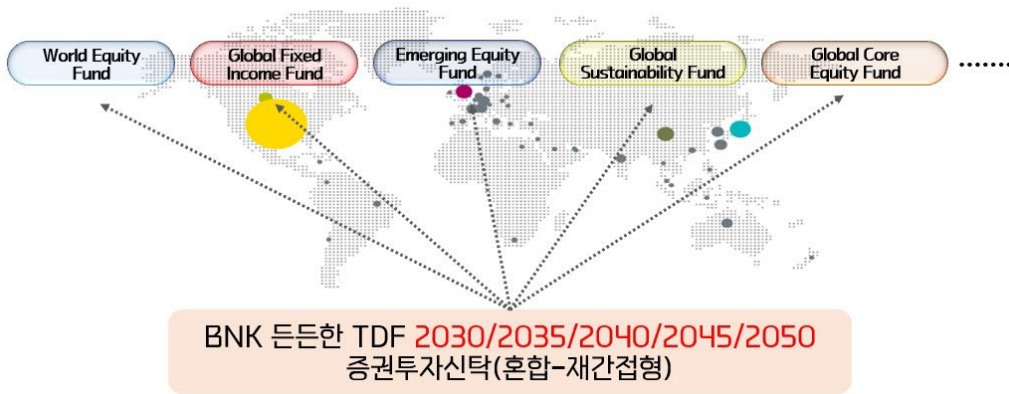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정정사유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펀드명 |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| 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| 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 |
| 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| 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| 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| 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| 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- | - | - 2026.04.01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(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→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),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| 가. ~ 나. (생략) 다. 재간접형 구조 | 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재간접형 구조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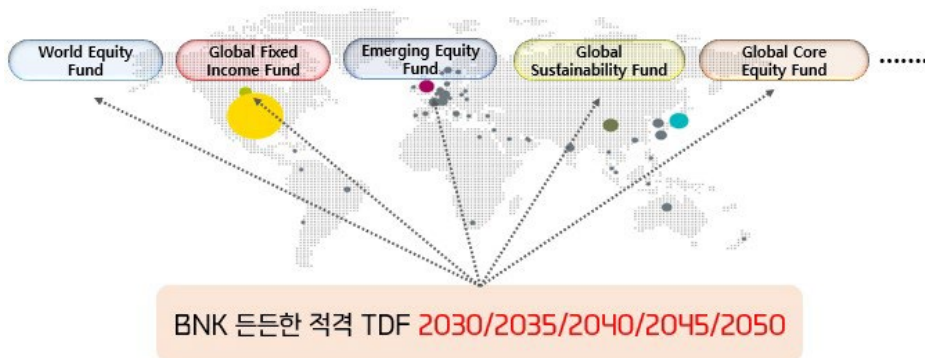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개정사항 반영 | 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(UCIT Fund)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u><그림 1></u> | 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(UCIT Fund)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u><그림 2></u>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|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세칙 개정사항 반영 | 가. 투자대상 ① 집합투자증권(60%이상)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집합투자증권 등"이라 한다) - <u>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하로 한다. 다만, 2050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u> -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 <u><신설></u> ②~⑪ (생략) 나. ~ 다. (생략) | 가. 투자대상 ① 집합투자증권(60%이상)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집합투자증권 등"이라 한다) - 「 <u>금융투자업규정</u> 」 제5-23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)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상으로 하고, 2050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-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고,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액의 50% 이하로 한다. - <u>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80% 이내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80% 이내로 한다.</u> ②~⑪ (현행과 동일) 나. ~ 다. (현행과 동일)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<신설> <신설> (2) ~ (3) (생략) 나. (생략)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-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에 부합합니다. [5년 단위별 자산배분 목표 비중] <표> (2) ~ (3) (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|

<그림 1>



<그림 2>



<표>

[5년 단위별 자산배분 목표 비중]

| 구분 | | BNK든든한적격TDF2050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목표시점 | 자산비중 | 위험자산 | 안전자산 |
| | 2025(설정시점) | | 78.00% |
| 2030 | | 78.00% | 22.00% |
| 2035 | | 64.75% | 35.25% |
| 2040 | | 51.50% | 48.50% |
| 2045 | | 38.25% | 61.75% |
| 2050 | | 25.00% | 75.00% |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2055 | 25.00% | 75.00% |
| 2060 | 25.00% | 75.00% |

<끝>.